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38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재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우,양세현,김한길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115,6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1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E은 C에게 ① 2017. 6. 16. 5,000,000원을 대출기간 15개월, 대출금리 연 20.6%, 연체이자율 연 27.1%(3개월 거치 후 매월 분할상환), ② 2017. 11. 30. 7,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금리 연 21.9%, 연체이자율 연 27.65%(매월 분할상환)로 하여 각 대출해주었다.
2) 그 후 C은 위 ① 대출원리금은 2018. 1. 24.까지, 위 ② 대출원리금은 2018. 2. 5.까지만 분할상환하였을 뿐 그 후에는 위 각 대출원리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3) E은 2018. 11. 1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개인회생신청 및 판결의 확정

1) C은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576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25. C의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0331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4. 17. 'C은 원고에게 16,115,698원 및 그중 6,294,935원에 대하여는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5%의, 3,307,685원에 대하여는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1%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1)

나. 상속 및 등기

- 1) G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12. 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H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 2) C은 2018. 1. 4.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H과 사이에 피고가 망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여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그 후 피고는 2018. 12. 2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E, J카드, K카드 등에 대한 각 해당 대출원리금채무 또는 카드원리금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 관련 채무(합계 134,119,000원 상당)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한 위 각 대출에 따라 C에 대하여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E로부터 그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 G가 사망함에 따라 C은 망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고, 만일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C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이 2018. 1. 4.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결국 C과 피고, H 사이에 2018. 1. 4. 망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한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 각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변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각 대출원리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보다 앞선 2020. 9.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16,115,698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3)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분할협의 후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각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1/3 소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4)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 후인 2018. 12. 2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3 소유지분의 시가는 53,333,333원(= 160,000,000원 ÷ 3, 소숫점 이하 버림) 상당이라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액 16,115,698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지분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범위 내에 있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6,115,6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은 사해행위로서 16,115,6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115,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동구 대 175.5㎡

2.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동구

백동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3.42㎡ 끝.

1) 이에 대하여 C이 위 법원 2020나4025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얼마 후인 2021. 11. 18.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하였다.